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-372호

「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29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의 위임·위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

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규제과학혁신단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
다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

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304호

○ 전화 : 043-719-1373 팩스 : 043-719-1370

○ 이메일 : arang1004@korea.kr

※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) 『법령·자료 - 입법/행정예고』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
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전문기관
과 체결한 업무 대행 협약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
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기관과 체결한 업무 대행 협약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권한 · 업무의 위임 · 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 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장에게 위임한다. 1. (생 략) 2. <u>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권한</u> 3. <u>법 제8조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· 사용 · 관리</u> 4. <u>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</u> 5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	제21조(권한 · 업무의 위임 ·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단	
연 락 처	(043) 719 - 1373